

제179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3. 11. 2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59호로 2013년 11월 14일 김종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·보호하기 위하여 위촉된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소외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의 위촉, 임기 및 위촉해제, 결격사유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2조 ~ 안 제4조)

나. 위원의 동별 정수를 규정함.(안 제5조)

다. 위원의 직무와 의무를 규정함.(안 제6조, 안 제7조)

라.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」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위촉한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- 주요내용을 보면
복지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사유, 동별 정수를 명시하였으며
위원의 직무 및 의무사항, 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,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.

- 본 제정안은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·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동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따라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향후 복지위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민·관 기관 및 지역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□ 사회복지사업법

- 제8조(복지위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복지위원의 자격, 직무,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- 제2조(복지위원)**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·면·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이 위촉한다.

1.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·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.
-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 <개정 2008.11.5>
1.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족·부자가족·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사회복지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 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 4.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